

실업급여제도 변화 및 실적 분석

박 혁*

I. 머리말

고용보험이 시행된 지 올해로 10년을 맞이했다. 1970년대 초 우리나라에서 처음 고용보험에 대한 비공식적인 논의가 이루어지기 시작한 이후, 정치 불안과 경제 불황으로 실업률이 급증하기 시작하여 정부와 학계를 중심으로 공식적인 ‘실업보험제도 도입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던 1980년대 초까지 10여년, 그리고 1991년 8월 23일 경제장관회의에서 제7차 경제사회발전 5개년계획기간 후반기 중 고용보험제도를 도입하기로 최종 결정하여 1995년 7월 1일 제도가 시행되기까지 다시 10여년, 그 이후 IMF 외환위기를 거치면서 최악의 실업난에 대한 사회적 완충(buffer)기능을 하며 성숙·발전되어 지금에 이르기까지 다시 10여년이 지나 왔다(유길상·이철수, 1991: 133~137). 따라서 우리나라 고용보험제도는 비단 표면적으로 드러난 10년이라는 실질적 시행기보다는 제도 자체의 가치 정립 및 설계 등을 둘러싼 30여년의 역사 속에서 변화되어 왔다고 할 것이다.

고용안정사업, 직업능력개발사업, 실업급여사업, 모성보호급여사업 등 네 가지 사업으로 이루어진 한국의 고용보험제도는 실업자의 생계안정 및 재취업활동 지원, 그리고 이와 관련하여 노동시장 구조변화 및 역동성에 따른 경제효율성 제고를 위한 사업주 지원 및 근로자의 직업생활 전기간을 통한 능력개발 촉진, 직업훈련의 활성화를 통한 적극적 인력정책의 역할을 담당해 왔다. 이 가운데 실업급여사업은 실업이라는 사회적 위험에 대한 사후적 지원책, 즉 실업에 따른 생계 위험을 최소화시키는 한편, 실업자의 조속한 재취업을 지원하는 소극적 노동시장정책의 일환이다. 한국의 실업급여사업은 이러한 제도적 특성으로 인하여 IMF 외환위기에 따른 대량실업과 대대적인 인력재배치의

* 한국노동연구원 노동보험연구센터 고용보험연구팀 책임연구원(histephen@kli.re.kr).

구조조정기를 세계사에 유례를 찾기 어려울 정도로 조기에 극복하고 안정기를 회복할 수 있었던 주요한 정책적 수단으로 평가받았다.

이에 본고는 고용보험제도 시행 10년 시점에 즈음하여 고용보험제도의 가장 핵심적인 사업으로 이해되고 있는 실업급여사업의 지난 10년간의 개괄적인 제도 변화 및 실적 분석을 통하여 제도 성숙기에 접어든 실업급여사업의 현재를 확인하고 제도 개선의 시사점을 도출해 보고자 한다.

이 글은 크게 다음의 세 부분으로 구성되었다. 먼저 고용보험 내 실업급여사업의 제도 변화 내용을 정리하고, 제도 실적이 나타나기 시작한 1996년 7월 이후부터 2004년까지의 9개년 동안의 제도 변화 및 사업 실적을 분석하도록 한다. 그리고 이러한 결과에 근거하여 실업급여사업의 개선점 및 정책적 시사점을 제언한다.

II. 실업급여사업의 제도 변화 내용

실업급여제도는 기본급여인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으로 구성되어 2004년 현재까지 제도 내 세부 사업들의 추가나 폐지 차원의 큰 변화 없이 운영되어 왔다.¹⁾

실업급여제도의 변화는 주로 ① 수급자 대상범위, ② 기여수준 및 수급요건, ③ 수급 금액수준 및 기간 등 세 가지 부문에서 이루어졌는데, 여기서는 기본급여인 ‘구직급여’에 한하여 그 구체적 내용을 살펴보도록 한다.²⁾

1. 수급자 대상범위

1993년 12월 27일 제정·공포되어 1995년 7월 1일 시행된 고용보험법에서는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는 근로자를 30인 이상 사업장 근로자로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골격

1) 다만 구직급여의 연장급여 가운데 특별연장급여제도는 실업급여제도 도입 후 제도 시행 과정 중에 유일하게 새로 도입된 제도로서, 그 실적이 지속적으로 나타나지는 않았다. 실업 급증 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구직급여 수급자격자의 재취업이 매우 어려운 상황에 처한 경우에 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기간에 한정하여 지급하는 제도의 특성 때문이다. 본 급여는 외환위기로 인하여 고실업이 사회문제화되었던 1998년에 도입되어 동년 7월 15일부터 1999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되었고, 구직급여일액의 70%가 60일 연장지급되었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실업급여제도에 대해서는 세부사업별로 개관한 <부록 1>을 참고하기 바란다.

2) 연도별 실업급여의 세부항목의 변화 추이에 대해서는 <부록 2>를, 그리고 ‘취업촉진수당’의 보다 자세한 제도 변화내용은 유길상·김동현·성재민·박혁(2005)을 참조.

은 외환위기로 인하여 노동시장이 불안정해지고 실업자가 급격히 늘어남에 따라 노동시장 재편 및 사회안전망 확충을 목적으로 고용보험 적용대상을 급속히 확대하게 되었고 사실상 전사업장으로 실업급여 지급대상 또한 확대되었다. 즉, 제도 도입시의 적용범위에 대한 부칙조항을 근거로 1998년 1월 1일부터는 10인 이상 사업장으로 고용보험 적용이 확대된 데 이어, 동년 두 차례의 법령 개정으로 5인 이상('98.2.12, 시행령 제2조, 제8차 개정<제15624호>, '98.7.1 시행), 1인 이상('98.10.1, 제11차 시행령 개정<제15902호> 및 시행) 사업장으로 각각 적용범위가 확대되어 고용보험 가입 전사업장의 근로자가 실업급여를 수급하게 된 것이다.³⁾

한편 1월 미만 고용되는 일용근로자의 경우 제도 시행 당시에는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없었으나, 고용보험의 사각지대를 줄이고 실업급여가 사회보험으로서의 실질적인 기능을 수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고용보험 적용범위에 포괄하게 되었다('02.12.30, '04.1.1 시행, 법 제8조의 3 삭제, 제11차 개정<제6850호>).

2. 기여수준 및 수급요건

가. 기여수준

실업급여는 근로자 전액부담으로 되어 있는 고용안정사업과 직업능력개발사업과는 달리 사업주와 근로자가 보험료의 50%를 나누어 부담하도록 되어 있다. 제도 시행 초기 실업급여사업의 보험료율은 2~3%대의 실업률에 근거하여 0.6%(노사 1/2씩 부담)로 책정되었으나, 외환위기에 따른 IMF 관리체제기를 전후로 한 1999~2000년까지는 급증한 실업급여 지출규모에 대응하여 1.0%로 인상되었다('98.2.20, 법 제57조 제1항, 제6차 개정<제5514호>, '98.7.1, 시행령 제69조 제1항, 제10차 개정<제15829호>).

이것이 2002년 하반기부터 경기회복 국면으로 들어서면서 다시금 실업률이 하락하고 실업급여 수급자 역시 그 수가 줄어들자 2003년부터는 0.9%로 요율이 인하되어 현재까지 적용되고 있다('02.12.30, 제20차 개정<제17853호>; 표 1 참조).

3) 다만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따라서 ① 농업·임업·어업 및 수렵업 중 상시 4인 이하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 ② 총공사금액이 매년 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 미만인 공사와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자 또는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건설업자가 아닌 사업자가 시공하는 공사로서 건설산업기본법 제41조 제1항 제2호 본문의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 공사, ③ 가사서비스업 등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경우에는 여전히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

〈표 1〉 고용보험 각 사업별 보험료율 및 부담

	2003~현재		1999~2002년		1995~1998년	
	근로자	사업주	근로자	사업주	근로자	사업주
실업급여사업	0.45%	0.45%	0.5%	0.5%	0.3%	0.3%
고용안정사업	-	0.15%	-	0.3%	-	0.2%
직업능력 개발사업	150인 미만 기업	-	0.1%	-	0.1%	-
	150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	-	0.3%	-	0.3%	-
	150인 이상~1,000인 미만 기업	-	0.5%	-	0.5%	-
	1,000인 이상 기업	-	0.7%	-	0.7%	-

자료: 노동부, 『고용보험백서』.

나. 수급자격요건

실업급여를 수급하기 위해서는 당해 실직근로자가 고용보험 적용사업장에서 이직전 기준기간(base period) 동안에 피보험단위기간(qualifying period)이 일정기간 이상이어야 한다. 즉 급여 수급을 위한 충분한 기여 요건을 충족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다. 제도 시행 초기에는 이직전 기준기간 18개월 동안 12개월의 피보험기간 충족요건으로 설정되어 있었으나, 외환위기에 따른 실업급증으로 1998년 3월부터 2000년 6월까지 한시적으로 기준기간과 피보험기간이 각각 12개월과 6개월로 완화되었다('98.2.20, 법 제31조 제1항, 법 부칙 제3조, 제6차 개정<제5514호>). 이러한 기준에 대해서 1998년 10월 1일부터 고용보험 적용범위가 1인 이상 전사업장으로 확대되면서 다시금 조정 필요성이 제기되었는데, 이는 임시·시간제 근로자들이 고용보험의 틀 내로 편입되면서 불안정한 노동시장에서 한계계층에 대한 실업급여의 사회안전망으로서의 포괄적 범위 설정이 문제시되었기 때문이었다. 이에 따라서 2000년 4월부터 기준기간 및 피보험기간이 각각 18개월과 180일로 완화되어 현재에 이르게 되었다('99.12.31, 법 제31조 제1항, 법 부칙 제3조, 제8차 개정<제6099호>).

다. 대기기간

실업보험을 운영하는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실업 신고일 당일부터 급여를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처음 실업신고 이후 일정기간 동안 급여지급을 하지 않는 대기기간(waiting period)을 설정하고 있다.4)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제도 시행 초기에 실업 신고일로부터

4) 대기기간 설정 이유에 대해서는, 단기실업의 경우 급여지급을 하지 않더라도 생계유지에 큰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다는 점, 잦은 이직을 억제하기 위한 측면, 그리고 이직후 일정기간은 재취업을 위해 소요되는 일종의 휴식 및 탐색기간으로 보고 실업급여를 통한 보호 범위로 규정하지 않는다는 점 등을 들 수 있다. 한편 이를 통하여 실업급여의 수급납용을 어느 정도 방지하고 고용보험 제정의 안

기계적으로 2주 동안을 대기기간으로 설정하여 급여를 지급하지 않았는데, 1996년 12월 법개정을 통하여 이를 ‘실업인정을 받은 2주가 경과해야만 대기기간이 만료’되도록 보다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였다(’96.12.30, 법 제40조, 제2차 개정<제5226호>). 그러나 제도 시행 과정에서 대기기간의 지나친 엄격성이 오히려 실직근로자의 재취업 의사 및 활동을 저해한다는 문제 제기가 지속되었고, 이에 따라서 2002년 12월 제차 법개정을 통하여 실업 신고일로부터 7일간의 기간으로 완화하였다(’02.12.30, 제11차 개정<제6850호>).

라. 구직등록 및 적극적 구직활동

실업급여는 원칙적으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직일 다음날부터 기산하여 12개월⁵⁾ 내에 지급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으며 급여수급자 스스로 재취업에 대한 적극적인 의사 및 노력을 입증해야만 급여수급이 가능하다. 이 기간을 초과하게 되면 잔여 소정급여일수에 대한 급여지급이 중단되는 한편 매 2주마다 공공직업안정기관(고용안정센터)에 출석하여 지난 2주간의 적극적 구직활동에 대하여 자료입증을 하지 못하면 급여를 지급할 수 없다. 이는 실업급여의 부정적 효과로 지적되는 실직자의 구직활동노력 감소 및 재취업 가능성 저해 효과를 방지하기 위한 일종의 대응기제라 할 수 있다.

그런데 실업급여 수급대상자는 본인의 소정급여일수에 대한 실업인정을 받을 때 구직활동에 대해서 입증만 가능하다면 급여신청 이후 급여수급가능 기간 12개월 내에서는 중간에 공백기간이 존재하더라도 단지 급여지급이 유예될 뿐 당해 기간에 대하여 소급해 실업인정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실수급기간이 장기화되는 현상이 나타나게 되었다. 이에 따라서 실업급여의 ‘재취업 촉진’ 기능이 약화된다는 문제 제기가 지속되었는데, 2002년 12월 법개정을 통하여 이른바 ‘소정급여일수의 불변기간화’ 요건을 도입함에 따라 지정된 실업 인정일에 출석하여 실업인정을 받지 않을 경우 소정급여일수를 공제하도록 하였다(’02.12.30, 법 제41조제1항, 제11차 개정<제6850호>). 이에 따라서 ‘소정급여일수’가 대기기간이 만료된 다음날부터 소정급여일수가 종료되는 날까지로 제한됨에 따라서 수급기준이 보다 엄격하게 적용되었다.

정을 도모하며 실업급여 수급요건 등을 확인할 수 있는 행정관리차원의 시간적 여유를 확보한다는 측면도 존재한다(유길상, 1997).

5) 제도 시행 초기에는 10개월로 규정되어 있었으나, 경제위기에 따라 불안정이 심화된 저소득장기실직자의 생계를 지원하기 위하여 실업급여 지급요건 완화와 함께 지급기간 연장(12개월)이 이루어졌다(’99.12.31, 법 제39조, 제8차 개정<제6099호>). 질병, 부상 등으로 인한 수급기간 연장은 기존 3년에서 4년으로 확대되었다.

3. 수급금액 수준 및 기간

가. 구직급여 지급수준

구직급여의 지급수준은 급여기초임금일액⁶⁾의 100분의 50을 곱한 금액으로 하고 상한과 하한을 두어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제도 초기에는 하한선이 설정되어 있지 않았으나 1998년 고용보험법 개정을 통해 최저임금일액의 70%로 규정되었다가('98.9.17, 법 제35조 제4항, 제7차 개정<제5566호>), 1999년 재개정을 통하여 2000년 1월 1일부터 90%로 상향조정되었다('99.12.31, 제8차 개정<제6099호>).

한편 구직급여일액의 상한은 초기에는 7만원으로 설정되었으나 외환위기에 따른 임금수준의 하락을 반영하여 1999년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을 통하여 1999년 7월부터 6만원으로 낮추어졌다가('99.2.1, 시행령 제48조 제1항, 제13차 개정<제16095호>), 외환위기 극복에 따른 임금인상을 반영하여 2000년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을 통하여 2001년 1월 이직자부터 다시 7만원으로 인상 적용되었다('00.12.30, 제16차 개정<제17090호>).

나. 소정급여일수⁷⁾

고용보험법 제정시에는 피보험단위기간이 1년 이상이였기 때문에 소정급여일수 구간 표상에 6월 이상~1년 미만에 해당되는 부분은 없었고 따라서 <표 2> 내 기움글꼴 부분의 소정급여일수 구간이 적용되었다. 그러나 외환위기 이후의 고실업에 직면하게 되자 1998년 고용보험법 개정을 통하여 1998년 3월 1일부터 구직급여 소정급여일수가 확대되었다('98.2.20, 법 제41조, 제6차 개정<제5514호>).

<표 2> 이직시 연령 및 피보험기간에 따른 소정급여일수

		과거					현재				
		피보험기간					피보험기간				
		6월 이상 1년 미만	1년 이상 3년 미만	5년 미만	10년 미만	10년 이상	6월 이상 1년 미만	1년 이상 3년 미만	5년 미만	10년 미만	10년 이상
이	25세미만		30일	60일	90일	120일	-				
직	30세미만	60일	60일	90일	120일	150일	90일	90일	120일	150일	180일
연	50세미만	60일	90일	120일	150일	180일	90일	120일	150일	180일	210일
령	50세이상, 장애인	60일	120일	150일	180일	210일	90일	150일	180일	210일	240일

6) 근로기준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평균임금.

7) 소정급여일수는 하나의 수급자격에 의하여 구직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 일수로서, 당해 수급자격자의 피보험기간과 이직시 연령에 따라서 그 일수가 구분된다.

즉 기존 25세 미만인 자를 별도로 구분하여 구직급여 소정급여일수를 피보험기간에 따라 30~120일로 규정하던 급여일수 항목을 삭제하여 25세 미만인 자도 30세 미만의 자로 통합하여 소정급여일수를 60~150일로 조정하였던 것이다. 이에 따라 1998년 3월 1일부터 수급자격요건이 완화되면서 2000년 6월까지 한시적으로 피보험기간이 6개월 이상 1년 미만인 이직자의 경우 이직 당시 연령과 관계없이 60일분의 구직급여를 수급하게 되었다(표 2의 왼쪽 ‘과거’ 부분의 첫번째 열).

이후 사회안전망으로서의 실업급여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서 1999년 고용보험법 개정에서는 모든 수급자격자의 소정급여일수를 30일 확대하여 종전의 60~210일을 90~240일로 조정,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게 되었고 현재까지 적용해 오고 있다(표 2의 오른쪽 ‘현재’ 부분; '99.12.31, 제8차 개정<제6099호>). 2005년 7월 1일부터는 고용보험 제도 시행 이후 10년 시점을 넘어서기 때문에 240일간의 구직급여 수급자가 나타나게 될 것이다.

III. 실업급여사업의 실적 분석

본 장에서는 1996년 7월부터 2004년 12월까지의 9개년의 주요 실적들을 분석함으로써 제도 시행후 10년 차를 맞은 실업급여사업의 현재를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연도별 실업급여 수급자수 및 지급액의 추이를 보면(표 3), 실제 실적치가 나타나기 시작한 1996년 하반기에는 7,199명에게 10,381백만원이 지급된 것에 그치지만 외환 위기로 인한 경기 악화로 실업자가 급증하였던 1998년에는 1,000%p에 가까운 증가세를 나타내며 신규 구직급여 수급자수가 30만명을 넘어섰고, 지급액 역시 9천억원대에 달하게 되었다. 이러한 급증세는 경제가 안정되기 시작한 1999년부터 신규 구직급여 수급자가 전년대비 7만여명이 감소한 307,568명, 2000년 227,789명으로 줄어들기 시작했지만, 2001년 다시 경기가 어려워지면서 다시금 314,778명으로 크게 늘어났다. 이후 2002~2004년까지 경기의 회복, 악화가 반복되면서 신규 구직급여 수급자수가 함께 변화하고 있는데, 2004년에는 제도 시행 이후 최고치인 465,776명으로 집계되었고, 지급액은 2003년에 이어 1조원대를 넘어서 지급된 것으로 나타났다.⁸⁾ 한편 실업급여 수급자수 및 총

8) 실업률이 증가세를 띠고는 있지만 전체 피보험자격 상실자수는 2002년 이래 오히려 감소하는 상황에서 신규 구직급여 수급자가 큰 폭으로 증가한 것은 <표 5>의 결과를 통하여 실업급여의 실질적인 수급대상자인 ‘비자발적 상실자’의 비중이 증가한 데서 원인을 찾을 수 있다. 구체적인 상실사유에 대해서 분석해 보면 그 원인이 보다 분명해지겠지만 본고에서는 제외한다.

〈표 3〉 실업급여 신규 수급자 및 수급자 연인원 추이(1996년 하반기~2004년)

(단위: 명, %, 백만원)

	신규 구직급여 수급자수	실업급여 수급자수	총 지급액	피보험자수	상실자수	실업률
1996년(하반기)	7,199	-	10,381	-	666,909	2.0
1997	39,911	(454.4)	77,864	(650.0)	1,392,542	2.6
1998	373,899	(836.8)	788,151	(912.2)	1,983,688	7.0
1999	307,568	(△17.7)	936,186	(18.8)	2,499,662	6.3
2000	227,789	(△25.9)	470,794	(△49.7)	2,981,558	4.1
2001	314,778	(38.2)	845,112	(79.5)	3,234,745	3.8
2002	276,023	(△12.3)	839,317	(△ 0.7)	3,404,669	3.1
2003	338,334	(22.6)	1,030,304	(22.8)	3,394,502	3.4
2004	465,776	(37.7)	1,448,305	(40.6)	3,364,005	3.5

- 주: 1) 실업급여 수급자수는 당해 연도의 각월 수급자수의 누계치로서 연인원 수치임.
- 2) 피보험자수는 당해 연도 12월 말 현재 기준 수치이며, 상실자수의 경우 당해 연도의 각월 수치의 누계치임.
- 3) 1996년 하반기 실업률은 6~12월의 평균치임.

자료: 한국산업인력공단 중앙고용정보원, 『고용보험통계월보』, 각호.

지급액 수치는 당해 연도 각월 수급자수 및 지급액의 누계치이기 때문에 최초 실업급여 신청시 한 번만 계수되는 신규 구직급여 수급자수 추이와는 다소 차이가 날 수 있다.

〈표 4〉는 특성별 실업자 대비 구직급여 수급자의 비중을 분석한 것이다. 구직급여 수급자수를 전국 실업자수로 나눈 구직급여 수급률은 1996년 하반기 실업급여 실적이 나타나기 시작한 이래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2000년 한 해만 경기회복의 영향이 두드러져 감소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와 같은 수급률은 비교대상의 범위를 실업급여의 적용대상으로 좁혀갈수록 높아지는 것을 알 수 있다.

2004년부터 일용근로자가 고용보험제도권 내에 편입되었지만 실업급여 수급요건(피보험단위기간)을 충족하여 실제 실적치가 나타나기 위해서는 2005년 하반기에나 가능할

〈표 4〉 특성별 실업자수 대비 구직급여 수급자 수 비중 추이(1996~2004년)

(단위: 명,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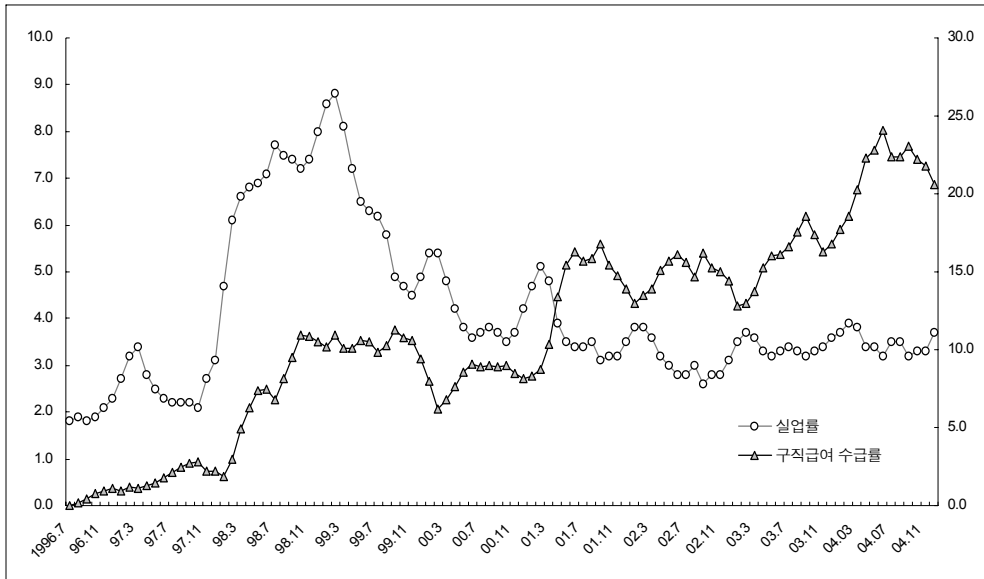
	월평균 구직급여 수급자수	실업자수 대비 구직급여 수급자수 비중			
		전국 실업자 대비	1년 미만 전직 실업자 대비	1년 미만 전직 임금근로자 대비	1년 미만 전직 상용·임시직 대비
1996년(하반기)	2,530	0.6	-	-	-
1997	10,226	1.8	-	-	-
1998	113,397	7.6	9.4	11.2	16.9
1999	142,577	10.4	13.4	15.8	27.4
2000	74,049	8.1	10.3	12.2	20.0
2001	112,611	13.3	17.0	20.0	30.9
2002	104,554	14.8	18.8	22.2	33.4
2003	122,666	15.8	20.8	23.8	33.7
2004	174,219	21.4	27.6	31.2	46.6

- 주: 1997년 이전 전직실업자 통계는 전직 없이 새로이 학교를 졸업하고 노동시장에 실업상태로 진입한 사람들을 포함하므로 제외했음.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한국산업인력공단 중앙고용정보원, 『고용보험통계연보』, 각년도.

[그림 1] 월별 실업률 및 구직급여 수급률 추이(1996년 7월~2004년 12월)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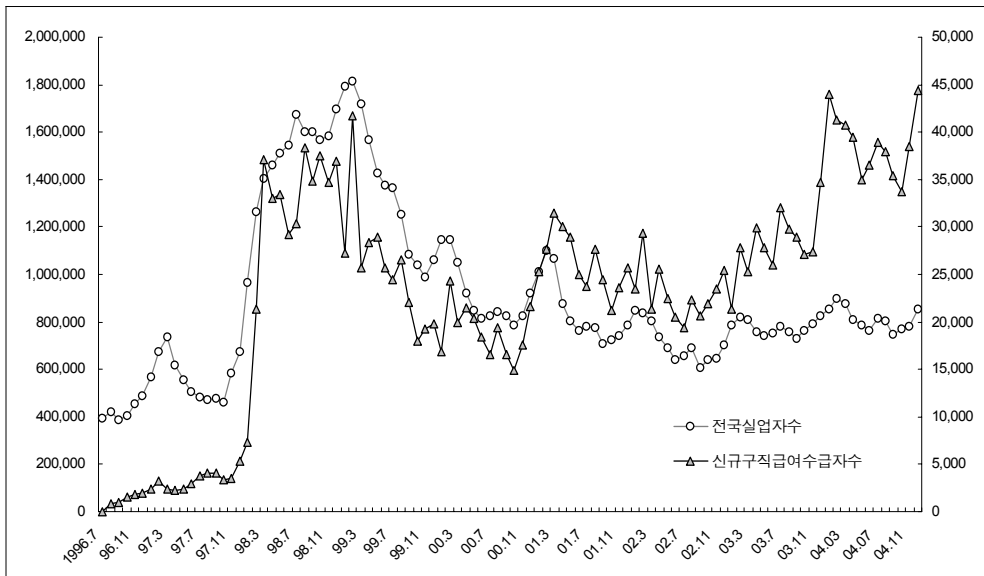


주: 그림의 왼쪽 수치는 실업률, 오른쪽 수치는 구직급여 수급률임.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 원자료; 한국산업인력공단 중앙고용정보원, 『고용보험통계월보』, 각호.

[그림 2] 전국 실업자수 및 신규 구직급여 수급자수 추이(1996년 7월~2004년 12월)

(단위: 명)



주: 그림의 왼쪽 수치는 전국 실업자수, 오른쪽 수치는 신규 구직급여 수급자수임.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 원자료; 한국산업인력공단 중앙고용정보원, 『고용보험통계월보』, 각호.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일용근로자를 논의로 했을 때, 실업급여 수급이 이직후 1년 이내에 수급가능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1년 미만 전직 상용·임시근로자 대비 구직급여 수급자 비중이 현 제도의 보호범위 내에 있는 실업자 중 실제 보호되고 있는 사람들의 비중을 보여준다고 하겠다. 이러한 점에서 볼 때 경제위기로 실업문제가 가장 심각하게 대두되었던 1998년의 경우 전국 실업자 대비 7.6%, 1년 미만 전직 상용·임시직 대비 16.9%에 그쳤다는 점은 향후 지속적인 제도 안정화 및 개선과정에서 주목해야 할 측면이다.

실업률 및 구직급여 수급률의 월별 추이는 [그림 1]에 나타나 있다. 전규모 사업장으로 고용보험 의무가입이 시행된 1998년 10월 이후 전국 실업자 중 구직급여 수급자 비중변동의 추이를 보면, 대체로 매년 11~12월 사이에 수급률이 떨어지다가 다음해 3월부터 다시 상승하는 규칙성이 확인된다. 이는 동절기에 건설일용직, 신규학졸자 등 고용보험의 제도권 내에 들어오지 못한 사람들이 실업하는 데서 나타나는 현상으로 판단된다.

한편, 실적이 급증하기 시작한 1998년 이후 실업률과 구직급여 수급률 사이에는 지속적으로 시차가 발생하고 있는데, 이는 두 수치간에 실업급여의 제도적 요인으로 인한 시차의 상관성이 존재하기 때문이다.⁹⁾ 즉, 특정시기 내에 실업자수가 감소함에도 구직급여 수급자수가 증가하는 현상은 구직급여 수급자수가 새롭게 구직급여를 수급하게 된 사람들이 일정기간 구직급여를 수급하면서 누적된 수치여서, 이에 따라 신규 수급자수의 변동을 일정시점이 지난 뒤에 반영하게 되는 특성을 갖는 데서 기인한다. 실직근로자가 구직급여 신청 시점까지 대략 40여일 정도가 소요되기 때문에 실업자수 증가는 이 정도의 시간이 지난 후에야 신규 수급자수에 반영되고, 신규 수급자들의 누적 수치인 구직급여 수급자수는 다시 신규 수급자수 증가가 발생한 시점보다 더 뒤에 변화를 반영하게 되는 것이다(그림 2 참조).

실업급여 실적은 그 실질적 수급대상자가 되는 상실자의 추이에 영향을 받는다. 특히 상실자는 고용보험 적용범위 확대에 따른 피보험자수의 증가 및 경기 요인을 민감히 반영하는 한편, 상실자 가운데 비자발적 사유로 피보험자격을 상실한 사람의 경우 현행 실업급여 수급요건을 충족시키고 있기 때문에 실업급여 재정에 직접적 영향을 준다(황덕순, 2005). 또한 1인 이상 전사업장으로 고용보험이 적용 확대된 상황에서 제도의 사각지대를 줄이고 사회보험으로서의 실업급여제도가 실질적인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자발적 상실자’의 추이 및 특성이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실업급여제도 분석시 함께 고려되어야만 한다. <표 5>는 이러한 문제의식을 전제로 실업자, 고용보

9) 유길상·김복순·성재민(2003: 30~34) 참조.

험 피보험자격 상실자, 실업급여 신청자 및 상실자 대비 비중 등을 연도별로 분석한 결과이다.

1996년 실적치가 아직 제도적 미정착 시기의 불안정한 수치이므로 1997년 이후의 추이를 살펴볼 때, 상실자는 1998년 198만명 수준으로 급증한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이지만 그 증가율이 줄어들고 있고 2003, 2004년의 경우 전년대비 소폭 감소하였다. 1998년 이후 급증한 상실자의 수치는 외환위기로 인한 실업 급증과 1998년 하반기부터 고용보험 적용이 크게 확대됨으로써 노동이동이 활발한 소규모 사업장들도 고용보험의 적용을 받기 시작했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표 5〉 실업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자 및 실업급여 신청자 추이(1996~2004년)

(단위: 명, %)

	실업자수 (A: 천명)	증감률	상실자수				실업급여 신청자수(D)	증감률	D/A	D/B	D/C
			전체(B)	증감률	비자발적(C)	증감률					
1996년(하)	424	-	666,909	-	54,205 (8.1)	-	10,133	-	2.4	1.5	18.7
1997	568	30.5	1,392,542	108.8	167,495 (8.1)	209.0	51,017	403.5	9.0	3.7	30.5
1998	1,490	162.4	1,983,688	42.5	665,715 (12.0)	297.5	438,465	759.4	29.4	22.1	65.9
1999	1,374	△ 7.8	2,499,662	26.0	723,842 (33.6)	8.7	327,954	△25.2	23.9	13.1	45.3
2000	913	△33.6	2,981,558	19.3	746,420 (29.0)	3.1	260,574	△20.5	28.5	8.7	34.9
2001	845	△ 7.5	3,234,745	8.5	906,406 (25.0)	21.4	349,148	34.0	41.3	10.8	38.5
2002	708	△16.2	3,404,669	5.3	840,603 (28.0)	△7.3	299,215	△14.3	42.3	8.8	35.6
2003	777	9.7	3,394,502	△0.3	1,007,909 (24.7)	19.9	379,600	26.9	48.9	11.2	37.7
2004	813	4.7	3,364,005	△0.9	1,150,850 (29.7)	14.2	471,542	24.2	58.0	14.0	41.0

주: '비자발적(C)' 셀에서의 괄호 내 비중 수치는 전체 상실자에서 비자발적 상실자가 차지하는 비율을 의미함.
 자료: 노동부 자료를 필자가 계산하여 재구성함.

앞서 <표 3>에서 상실자수와 실업률의 감소(혹은 소폭 증가)에도 불구하고 신규 구직급여 수급자수가 지속되는 현상을 확인하였는데 본 표의 결과 추이에서 그 원인을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실질적인 실업급여 수급대상자라고 할 수 있는 비자발적 상실자의 추이는 전체 상실자 추이와는 조금 다른 양상을 보인다는 점이 바로 그것인데, 실업자수의 변동과 상대적으로 비슷한 추이로 변화하며 이에 따라 실업급여 신청자수도 함께 변하고 있다는 것이다. 실업자수가 줄어들기 시작한 1999년과 2000년의 경우 비자발적 상실자 역시 증가율이 큰 폭으로 줄어들었고 이에 따라 실업급여 신청자 역시 크게 감소한 것으로 미루어 볼 때, 실업급여 수급자가 비자발적 상실자의 추이에 직접적으로 영향 받는 것이라 하겠다.

그러나 이는 다른 한편으로 생각해 볼 때, 자발적 상실자 비중이 60% 이상을 상회하는 우리나라의 현실을 볼 때 실업급여의 사회적 기능을 강화한다는 차원, 그리고 변화하는 노동시장에 좀더 능동적으로 대응한다는 차원에서 제도 틀의 수정을 고려해 볼 수도 있다. 상실자 대비 수급자격 신청자의 비중 수치가 22.1%로 최고를 기록한 1998년의

경우는 수급자격요건이 1998년 3월부터 2000년 6월까지 한시적으로 완화된 요인이 반영된 것으로 판단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균 10%대의 낮은 수치가 지속된다는 점은 실업급여의 사회안전망으로서의 역할을 위해서 추가적인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시사해 준다.

다음으로 실업급여의 세부사업별로 수급자 및 지급액 실적의 연도별 추이를 살펴보고자 한다.

<표 6>에 제시된 것처럼, 2004년 현재 실업급여 총수급인원 707,432명, 총지급액 1조 4,483억원으로 집계된다. 실제 급여지급이 시작된 1996년 하반기에는 수급자수가 8,063명에, 지급액 104억 64백만원에 불과했지만 IMF 관리체제하의 경제위기 시기였던 1998, 1999년에는 각각 411,686명에 7,994억 16백만원, 484,772명에 9,361억 63백만원이 지급됨으로써 지급액이 급증하였다. 그러던 것이 2000년에 경기가 회복됨에 따라 수급자 및 지급액 실적이 크게 낮아졌다가 2001년부터 다시금 증가추세를 보이기 시작하며 2003년에는 지급액이 1조원대를 넘어서게 되었다.

실업급여사업의 대표적인 급여는 구직급여로서 외환위기를 전후해서는 전체 수급자 및 지급액에서 각각 95% 수준까지 차지하던 것이 2000년부터는 그 비중이 조금씩 낮아지는 추이를 나타냈다. 이것은 취업촉진수당의 하나인 조기재취업수당의 실적이 지속적으로 증가한 것에 기인하는데 전체 실업급여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그렇게 높지는 않지만, 2004년 현재 81,419명에 1,148억 59백만원까지 지급됨으로써 전체 실업급여사업 수급자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1.5% 수준을 나타내고 있다. 특히 2004년의 경우에는 수급요건의 완화와 지급대상 확대, 그리고 지급액 수준 조정 등의 법령개정 요인이 반영된 결과이다(부록 2 참조).

한편 조기재취업수당 이외에 실직근로자의 재취업 촉진을 위한 여러 수당들의 활용 실적이 지극히 미미하다는 사실은 제도 시행 10여년의 성과를 평가할 때 매우 아쉬운 부분이다. 전체 실업급여사업의 지출에서 대부분의 비중을 차지하는 구직급여가 제도적 성과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이러한 수당들이 추가적인 인센티브나 지원책으로 활용될 수 있는 방향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그림 5]는 신규 구직급여 수급자(신규 수급자)와 조기재취업수당 수급자(조기수당 수급자)의 연도별 추이 및 신규 수급자수 대비 조기수당 수급자수의 비중을 제시한 것인데, 이를 통하여 실업급여사업에서 구직급여 다음으로 큰 실적을 나타내고 있는 조기재취업수당 실적 추이를 살펴보고자 한다. 신규 수급자와 조기수당 수급자의 추이를 함께 살펴보는 것은 조기수당이 구직급여와 별개의 급여가 아니라 구직급여를 수급하던 중 적극적 구직활동에 의한 조기 재취업 성과를 달성했을 때 지급되는 일종의 인센티브 개념을 갖기 때문이다. 조기수당을 재취업 보너스(reemployment bonus)라고 규정하는 이유도 이러한 이유에 근거한다.

〈표 6〉 실업급여 지급자수 및 비중 추이(1996~2004년)

(단위: 명, 백만원, %)

		전체	소계 1	구직급여 ¹⁾	상병 급여	취직촉진수당				
						소계 2	조기재취업수당 ²⁾	능력개발 수당	이주비	광역구직 활동비
1996년 (하반기)	수급자수	8,063 (100.0)	7,231 (89.7)	7,192 (89.2)	39 (0.5)	832 (10.3)	815 (98.0) (10.1)	14 (1.7)	0 (0.0)	3 (0.4)
	지급액	10,464 (100.0)	9,990 (95.5)	9,962 (95.2)	28 (0.3)	474 (4.5)	470 (99.1) (4.5)	4 (0.8)	0 (0.0)	0 (0.0)
1997년	수급자수	49,117 (100.0)	44,591 (90.8)	44,334 (90.3)	257 (0.5)	4,526 (9.2)	4,481 (99.0) (9.1)	41 (0.9)	1 (0.0)	3 (0.1)
	지급액	78,737 (100.0)	76,159 (96.7)	75,947 (96.5)	212 (0.3)	2,578 (3.3)	2,558 (99.2) (3.2)	19 (0.7)	0 (0.0)	0 (0.0)
1998년	수급자수	411,686 (100.0)	393,935 (95.7)	392,569 (95.4)	1,366 (0.3)	17,751 (4.3)	17,712 (99.8) (4.3)	22 (0.1)	11 (0.1)	5 (0.0)
	지급액	799,416 (100.0)	784,137 (98.1)	783,118 (98.0)	1,019 (0.1)	15,279 (1.9)	15,260 (99.9) (1.9)	15 (0.1)	2 (0.0)	0 (0.0)
1999년	수급자수	484,772 (100.0)	459,518 (94.8)	455,355 (93.9)	4,163 (0.9)	25,254 (5.2)	25,153 (99.6) (5.2)	16 (0.1)	53 (0.2)	11 (0.0)
	지급액	936,163 (100.0)	913,924 (97.6)	911,287 (97.3)	2,637 (0.3)	22,239 (2.4)	22,222 (99.9) (2.4)	5 (0.0)	9 (0.0)	0 (0.0)
2000년	수급자수	332,692 (100.0)	307,918 (92.6)	303,859 (91.3)	4,059 (1.2)	24,774 (7.4)	24,710 (99.7) (7.4)	2 (0.0)	38 (0.2)	11 (0.0)
	지급액	470,793 (100.0)	445,905 (94.7)	443,544 (94.2)	2,361 (0.5)	24,888 (5.3)	24,879 (100.0) (5.3)	0 (0.0)	7 (0.0)	0 (0.0)
2001년	수급자수	428,156 (100.0)	383,830 (89.6)	377,752 (88.2)	6,078 (1.4)	44,326 (10.4)	44,129 (99.6) (10.3)	37 (0.1)	163 (0.4)	8 (0.0)
	지급액	845,116 (100.0)	787,951 (93.2)	783,852 (92.8)	4,099 (0.5)	57,165 (6.8)	57,122 (99.9) (6.8)	2 (0.0)	27 (0.0)	0 (0.0)
2002년	수급자수	416,041 (100.0)	372,142 (89.4)	366,270 (88.0)	5,872 (1.4)	43,899 (10.6)	43,690 (99.5) (10.5)	65 (0.1)	181 (0.4)	3 (0.0)
	지급액	839,315 (100.0)	778,227 (92.7)	773,856 (92.2)	4,371 (0.5)	61,088 (7.3)	61,049 (99.9) (7.3)	4 (0.0)	28 (0.0)	0 (0.0)
2003년	수급자수	502,211 (100.0)	450,483 (89.7)	444,061 (88.4)	6,422 (1.3)	51,728 (10.3)	51,537 (99.6) (10.3)	1 (0.0)	186 (0.4)	0 (0.0)
	지급액	1,030,304 (100.0)	950,423 (92.2)	945,599 (91.8)	4,824 (0.5)	79,881 (7.8)	79,852 (100.0) (7.8)	0 (0.0)	27 (0.0)	0 (0.0)
2004년	수급자수	707,432 (100.0)	625,760 (88.5)	619,420 (87.6)	6,340 (0.9)	81,672 (11.5)	81,419 (99.7) (11.5)	3 (0.0)	241 (0.3)	9 (0.0)
	지급액	1,448,306 (100.0)	1,333,409 (92.1)	1,327,384 (91.7)	6,025 (0.4)	114,896 (7.9)	114,859 (100.0) (7.9)	1 (0.0)	36 (0.0)	0 (0.0)

주: 1) 구직급여 및 상병수당의 비중은 전체 실업급여 실적에서의 비중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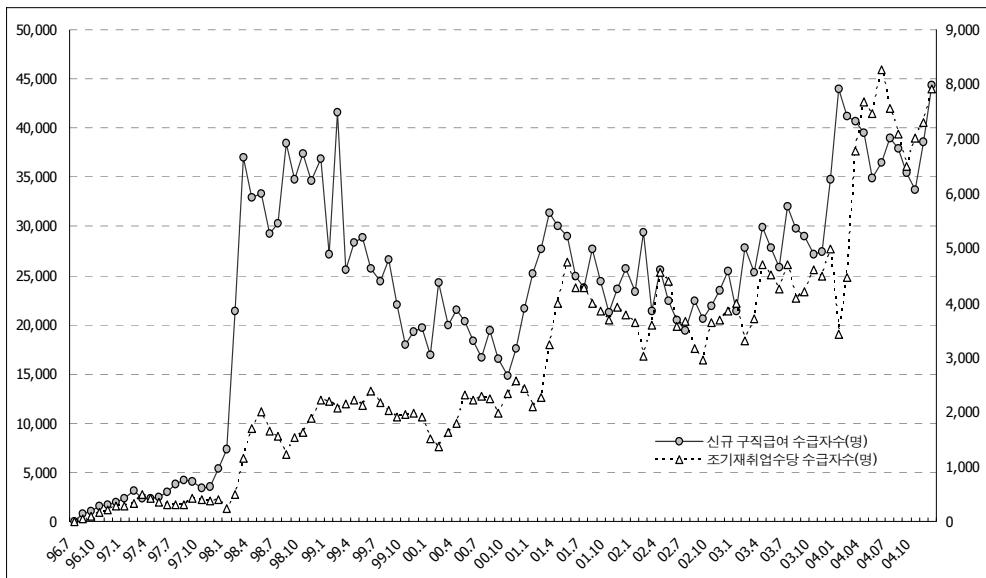
2) 조기재취업수당의 비중에서 앞의 수치는 취직촉진수당 내에서의 비중을, 뒤의 수치는 전체 실업급여 실적에서의 비중을 의미하며, 기타 수당들의 비중은 취직촉진수당 내에서의 비중임.

3) 지급액은 해당연도말 기금결재일 기준으로 집계된 것으로서, 전산망의 수정 및 보정작업 등으로 인하여 타기관 및 이전 실적자료들과 차이가 날 수 있음.

자료: 한국산업인력공단 중앙고용정보원, 『고용보험통계연보』, 각년도.

[그림 5]의 추이를 보면, 신규 수급자의 경우 매해 동절기 및 1~2월달에 최고 수치를 기록한 이후 그 수가 줄어드는 유형을 나타내는 반면, 조기수당수급자의 경우 그 시점에 구직급여를 수급하던 사람들이 소정급여일수의 1/2을 수급하기 이전 시점에 지정된 업종에 재취업되어야만 급여 수급이 가능하기 때문에¹⁰⁾ 일정 정도의 시차를 두고 역의 관계를 나타내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2004년 이직자부터 적용된 완화된 수급 요건의 효과는 아직까지 명확치 않으며, 2001년 시행령 개정 당시 조기수당의 수급요건 완화 및 금액수준 상향조정 등의 조치에도 불구하고 그 구체적인 효과가 명확히 드러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조기수당이 갖는 ‘조기 재취업’을 위한 적극적 지원책으로서의 제도 성과를 긍정적으로 판단하기는 어렵다. 다만 조기수당 수급비중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구직급여 수급기간의 단축 등에 긍정적 영향을 준다는 선행연구 결과들을 미루어 볼 때, 향후 도덕적 해이를 방지할 수 있는 적정 수준에서의 지급요건 및 수급기준에서의 추가적 개선 조치가 조기재취업수당이 실업급여사업의 중요한 한 축을 담당할 수 있는데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그림 5] 신규 구직급여 수급자수와 조기재취업수당 수급자수의 연도별 추이



주 : 그림의 왼쪽 수치는 신규 구직급여 수급자수, 오른쪽 수치는 조기재취업수당 수급자수를 의미함.

자료 : 한국산업인력공단 중앙고용정보원, 『고용보험통계월보』, 각호.

10) 현재 이 규정은 2001년 7월에 이루어진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으로 2004년 1월 이직자부터는 미지급일수가 소정급여일수의 1/2 이상일 필요가 없게 되었으며, 자영업 개시의 경우나 대기기간 중 취업의 경우에도 수당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다.

IV. 정책 제언 및 맺음말

지금까지 실업급여사업의 지난 10여년간의 주요 제도 변화 및 개괄적인 실적분석을 통하여 그 성과를 고찰함과 동시에 향후 개선과제를 도출해 보았다. 이것을 다시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실업급여사업은 외환위기로 인한 경기불황시 실직근로자의 생계보전 및 재취업 지원이라는 두 가지 목적, 즉 사회보장적 성격과 노동시장정책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했다고 판단된다. 다만, 본고에서는 실직시 생계보전이라는 사회보장적 성격, 사회안전망으로서의 역할에 대해서 언급할 때 과연 어느 정도의 만족할 만한 수준까지 당해 실직자의 수요를 채웠는가라는 문제에 대해서는 심층적인 분석을 통한 논거들을 제시하지는 않았기 때문에 실업이라는 사회적 위험에 대한 1차적인 방어막 기능까지를 평가할 뿐이었다. 또한 사후적 개입 성격의 소극적 노동시장정책으로서의 역할에 대해서도 실증적인 차원에서의 논증을 이끌어낸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 역시 추후의 과제로 남겨둔다. 가령 실업률의 변화 추이와 수급자의 증가 추이가 연동하지 않고 2003년 이후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수급자수 및 지급액 등에 대해서는 그 직접적 원인을 제공하는 것으로 판단된 비자발적 상실자의 특성 및 이에 대한 모형 분석 등이 필요할 것이다.

둘째, 실업급여사업은 지속적인 대상범위 확대 노력과 위기 상황에서의 대응책으로서의 성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제도의 사각지대가 크다는 점은 향후 제도 개선 방향에 있어서 핵심 사안으로 주목해야 한다. 2004년 일용근로자까지도 급여수급 가능 대상으로 포괄하여 사실상 전사업장의 모든 근로자가 대상층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상실자에서 실제 급여를 신청하여 수급하는 비율은 여전히 매우 낮고, 실업자 대비 실업급여 수급자의 비중 또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는 있지만 해외 실업보험을 운영하고 있는 국가들에 비해서 낮은 수준이다. 향후 자발적 이직자 등으로 적용범위 확대 논의가 구체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제도의 실질적 기능이 활성화될 수 있는 대안들이 함께 고려되어야만 제도의 활용 및 성과들에 진전이 이루어질 것이다.

셋째, 실업급여는 금전적 지원만으로 제도적 성과를 낼 수 없는 속성을 가지기 때문에 급여 수급자의 원활한 재취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전달체계에서의 제반 인프라 정비 및 다양한 취업지원 프로그램들이 급여지급과 연동될 수 있는 인센티브 시스템 마련 등의 고려도 향후 정책적 개선책으로 중요하게 검토되어야 하며(유길상·김동현·성재민·박혁, 2005; 황덕순, 2005), 이러한 부분들이 두번째에서 언급한 활성화 대안들의 구

체적 정책예시라 하겠다. 이와 관련하여 현재 추진중인 ‘고용서비스 선진화 방안’에 근거한 시범사업들의 구체적 성과들이 보다 효과적인 노동시장정책으로서의 실업급여제도를 구축해 가는데 전환의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 **국회**

<참고문헌>

- 노동부, 『고용보험백서』 각년도
 유길상·이철수, 『고용보험해설』, 박영사, 1996.
 유길상, 『실업급여 수급요건의 국제비교』, 한국노동연구원, 1997.
 유길상·김복순·성재민, 『실업급여 수급자의 특성과 재취업 행태』, 2003.
 유길상·김동현·성재민·박혁, 『조기재취업수당의 효율성 평가』, 2005.
 한국산업인력공단 중앙고용정보원, 『고용보험통계월보』·『고용보험통계연보』 각호
 황덕순, 「취약계층 근로자의 고용보험·국민연금 적용실태와 개선방안」, 『고용보험시행 8주년 기념 토론회 자료집』, 한국노동연구원, 2003.
 황덕순, 「고용보험 10년사-실업급여 사업평가와 개선방안」, (미발표 논문), 2005.

〈부록 1〉 실업급여제도 주요 사업내용 개괄(2005년 2월 현재)

		수급요건	수금액	신청절차
구 직 급 여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사업장에서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180일(피보험단위기간) 이상 근무하여야 하고 회사의 경영사정 등과 관련하여 비자발적으로 이직한 경우 ※ 정당한 사유 없는 자기사정으로 직장을 그만 두거나 본인의 중대한 잘못으로 해고된 경우에는 수급 불가 실직후 근로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재취업활동을 하여야 함. ※ 퇴직시 퇴직금·퇴직위로금 등으로 1억원 이상을 수령하거나 수령이 확실시 되는 자는 실업 신고일로부터 실업급여 지급을 3개월 유예 일용근로자는 실업급여 신청전 1월간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이어야 하고,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무해야 하는 등 추가적 요건을 충족해야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이직시 연령과 피보험기간에 따라 90~240일간 실직전 평균임금의 50%를 수급하게 됨. - 최고: 35,000원 - 최저: 최저임금액의 90%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실직후 거주지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구직등록 및 「수급자격인정신청서」 제출 신청후 매2주마다 고용안정센터에 「실업인정신청서」를 작성·제출 - 도서거주자의 경우 우편, 인터넷을 이용한 실업인정 - 60세 이상 고령자 및 장애인의 경우 4주마다 실업인정 ※ 대기기간(7일) 종료후 소정급여일수(90~240일)에 해당하는 날까지 실업급여 지급(지정된 실업인정일날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취업한 경우 당해기간 동안 소정급여일수가 줄어듦)
	상 병 급 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실업급여 신청후 7일 이상의 질병·부상으로 실업인정을 받지 못한 경우 수급자격자가 출산으로 인하여 취업이 불가능한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구직급여액과 같은 금액 	<ul style="list-style-type: none"> 거주지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상병급여(출산시) 청구서 제출 ※ 대리인 청구 가능
연 장 급 여	훈련연장급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방노동관서장의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시에 의하여 훈련을 수강하는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는 기간(최대 2년) 동안 구직급여의 70%를 연장 수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훈련기간 동안 훈련기관 소재지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월1회 수강증명서 제출
	개별연장급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취업이 특히 곤란하고 생활이 어려운 수급자격자로서 지방노동관서장이 인정하는 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취업이 특히 곤란한 경우에는 60일 범위 내에서 구직급여의 70%를 연장 수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거주지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개별연장급여신청서 제출
취 직 촉 진 수 당	조기재취업수당	<ul style="list-style-type: none"> 6개월 이상 안정된 직장에 재취직되거나 자영업 창업이 확실하다고 인정될 것(자영업의 경우에는 실업인정시 1회 이상 자영업 준비활동을 인정받아야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남은 기간 동안 받을 수 있는 구직급여액의 1/2을 수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재취업후 거주지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조기재취업수당청구서 제출
	직업능력개발수당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방노동관서장이 지시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을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실제로 훈련을 받은 날 1일 5,000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월1회 훈련기관 소재지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직업능력개발훈련수강증명서 제출
	광역구직활동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방노동관서장의 소개로 거주지에서 50km 이상 떨어진 회사에 구직활동을 할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숙박료: 1일 22,000원 운임: 철도(무궁화호 보통), 선박(2등정액요금), 자동차(건설교통부 고시요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광역구직활동 종료일부터 14일 이내에 거주지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광역구직활동비 청구서 제출
	이 주 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취업하거나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기 위하여 이사를 할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이주거리와 동반가족수에 따라 43,150~348,790원 수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이주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거주지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이주비 청구서 제출
모 성 보 호 급 여	산전후휴가급여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고용보험에 6개월 이상 가입한 후(산전후휴가 종료일 기준) 산전후휴가를 부여받은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1개월분의 통상임금 지급 - 최고: 135만원 - 최저: 최저임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산전후휴가종료 후 6월이내 사업장소재지 관할 또는 거주지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신청
	육아휴직급여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고용보험에 6개월 이상 가입한 후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부여받은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매월 40만원을 지급(여자의 경우 최대 10.5개월, 남자의 경우 12개월을 지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종료후 6월이내 사업장소재지 관할 또는 거주지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신청

자료: 노동부.

〈부록 2〉 실업급여제도 연도별 주요 제도내용 변화 개괄(1995~2004년, 시행일 기준)

		1995	1996	1997
구 직 급 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업인정 : 1회/2주 ◦ 기준기간 및 피보험단위기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준기간 : 이직전 18개월 - 피보험단위기간 : 이직전 12개월 ◦ 소정급여일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정급여일수 : 30~210일 ◦ 수급기간 : 10개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피보험기간이 1년 이상 3년 미만이고, 연령이 25세 미만인 경우 30일 - 피보험기간이 10년 이상이고 연령이 50세 이상이거나 장애인인 경우 210일 ◦ 급여기초임금일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저액 : 최저임금액의 50% - 상한액 : 70,000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적용기준(1996.7.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0인 이상 사업장 실업급여 지급 	
	상 병 급 여			
	연 장 급 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훈련연장 급여 ◦ 개별연장 급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질병, 부상 등의 사유로 수급기간을 연장할 때 이전에는 최장 3년까지 연장 		
취 직 촉 진 수 당	조기재취업수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기재취업수당 지급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잔여구직급여액의 1/3 지급 - 수급기준 : 소정급여일수의 1/2 이상을 남기고 '1년을 초과'하여 계속 고용될 것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는 직업에 취직시 수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기재취업수당 지급액 상향 (1997. 12.3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잔여구직급여액의 1/3→1/2
	직업능력 개발수당			
	광역구직 활동비			
	이 주 비			

〈부록 2〉의 계속

		1998	1999	2000
구 직 급 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적용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0인 이상 사업장 실업급여 지급 (1998.1.1) - 5인 이상 사업장 실업급여 지급 (1998.3.1) - 1인 이상 사업장 실업급여 지급 (1998.10.1) ▫ 실업급여보험료율 상향조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0.6% → 1.0% ▫ 실업인정 : 천재지변시 1회/4주(1998.7.1) ▫ 기준기간 및 피보험단위기간(1998.3.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준기간 : 이직전 12개월 - 피보험단위기간 : 이직전 6개월 ▫ 소정급여일수 확대(1998.3.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0세 미만인 경우 60일로 연장 - 피보험기간이 6개월 이상 1년 미만인 경우 연령과 무관하게 60일로 확대 ▫ 급여기초임금일액 상향(1998.10.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저액 : 최저임금액의 70% ▫ 고액금품수령자급여지급유예 (1998.9.1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억 이상 고액금품수령자 실업신고 일로부터 3개월간 급여지급 유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급여기초임금일액 하향(1999.7.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한액 : 70,000원→60,000원 ▫ 수급기간확대 : 10개월→12개월 (1999.12.3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준기간 및 피보험단위기간(2000.4.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준기간 : 이직전 18개월 - 피보험단위기간 : 이직전 180일 ▫ 소정급여일수 확대(2000.4.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든 수급자격자의 소정급여일수를 30일간 연장(90~240일) ▫ 급여기초임금일액 상향(2000.1.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저액 : 최저임금액의 90%
	상 병 급 여			
연 장 급 여	훈련연장 급여			
	개별연장 급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별연장급여 시행(1998.2.2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간 : 1998.7.15~1999.12.31 - 내용 : 고용사정이 극히 악화된 경우(3개월간 계속하여 실업률이 6% 이상 지속)실업급여 지급일수를 60일의 범위 안에서 연장하여 지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장기간 확대(1999.12.3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장 4년까지 연장 ▫ 개별연장급여 수급 사유 확대 (1999.12.3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취직이 곤란자뿐만 아니라 생활이 어려운 자로서 실업인정을 받은 자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지급요건을 추가 - 실업부조적 성격 강화 	
취 직 축 진 수 당	조기재취업 수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기재취업수당 수급기준 완화 (1999.12.3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정급여일수의 1/2 이상을 남기고 '1년을 초과하여 계속 고용될 것이 확실하다고 인정시'에서 '6월이상 계속 고용시'로 완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급액(1995.7.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정급여일수의 1/2이상을 남기고 재취업시, 구직급여의 미지급일수의 1/2 지급
	직업능력 개발수당			
	광역구직 활동비			
	이 주 비			

<부록 2>의 계속

		2001	2002	2003	2004
구 직 급 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급여기초임금일액 (2001.1.1) 상향 - 상한액 : 60,000원→70,000원 ◦ 실업인정특례(2001.7.23, 신설) - 도서거주자 및 60세 이상 고령자·장애인의 경우 매 4주 1회로 특례 실업인정 ◦ 경미한 부정행위에 대한 추가징수 - 경미한 부정행위 1회 위반시, 100% 추가징수 면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업급여보험료율 하향조정 -1.0% → 0.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적용확대 - 일용근로자 실업급여 지급(2004.1.1) ◦ 구직급여 감액규정 삭제(2002.12.30) - 적용시점 : 2004.1.1 이후 실업인정부터 - 법개정전 수급자격신청자의 경우에도 2004.1.1부터는 감액하지 않음. ◦ 대기기간 변경(2002.12.30) - 실업인정 받은 14일→실업신고일로부터 7일(2004.1.1 이후 수급자격신청자부터 적용) ◦ 소정급여일수의 불변기간화(2002.12.30) - 대기기간이 만료된 다음날부터 소정급여일수가 종료되는 날까지로 제한 - 실업인정일에 불출석시 소정급여일수 공제 - 2004.1.1 이후 수급자격 신청자부터 적용 - 단, 2003.12.31 이전 신청자가 2004.1 이후에도 계속 실업급여 수급시, 지정된 실업인정일에 출석하지 않는 경우 소정급여일수를 공제하지 않음 ◦ 자영업 준비활동 실업급여 지급
	상 병 급 여				
연 장 급 여	훈련 연장 급여				
	개별 연장 급여				
취 직 촉 진 수 당	조기재취업 수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급확대(2001.7.7) - 3D업종 중 상시구인업체의 기능원 등으로 재취업시, 구직급여의 미지급일수의 전액 지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기재취직수당 전액지급 요건 완화(2002.12.30) - 3D업종 '상시구인업체' 재취업 요건 삭제 ◦ 고액금품수령자 대기기간 면제 (2002.12.30, 신설) - 고액금품수령자가 3개월간 지급유예기간이 지난 경우 대기기간을 거친 것으로 인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영업 창업 조기재취업수당 지급 - 자영업 준비활동 1회 이상 인정받은 경우에 한함 ◦ 수급기준 변경(2003.12.18) - 대기기간중 취업시에도 지급 - 잔여급여일수와 무관하게 재취업시, 잔여구직급여의 1/2를 조기재취업수당으로 지급
	직업능력 개발수당				
	광역구직 활동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급조건 완화(2003.12.18) - 대기기간 중 광역구직활동시도 지급
	이 주 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급조건 완화(2003.12.18) - 자영업 목적 및 대기기간 중 광역구직활동시도 지급
	산전후휴가 급여				
모 성 보 호 급 여	육아휴직 급여	◦ 급여수준(2001.10.31) : 20만원/월	◦ 급여수준 상향(2002.12.30) : 30만원/월		◦ 급여수준 상향(2004.2.25) : 40만원/월